

문서번호 : HNL19-03-0987

시행일자 : 2019. 10. 01.

수 신 : 회원사제위

담 당 : 인사담당자

제 목 : [노무이슈] 휴직 등과 4대 보험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최근 실제 상담사례와 노무이슈를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당 노무법인의 의견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휴직 등과 4대보험 1부. 끝.

하나로컨설팅노무법인

공인노무사 신 정 욱



□ 최근 주요 상담주제 및 노무이슈

- 최근 무급휴가(병가), 무급휴직, 근로시간 단축, 노조전임자(타임 오프 아닌 순수한 무급 전임자인 경우를 말함) 등의 경우에 4대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감경·면제·납부유예 제도 문의가 많았고 이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회원사분들께 공유드립니다.
- 이하 내용은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산재보험 각 EDI로 전산 신고가 가능하며, 혹시라도 EDI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을 위하여 서식 신고서도 첨부하여 드립니다.
-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보험별 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	1577-1000
국민연금공단	1355
근로복지공단(고용산재보험)	1588-0075

□ 휴직 등과 4대보험 보험료 감경·면제·납부유예 등 제도 안내

○ 총 설

- 휴직은 일정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, 4대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.
- 그런데 취업규칙 또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동안 무급이 원칙이므로 이 기간동안 4대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.

○ 건강보험: 납입고지유예제도

- 신청절차

- 아래 사유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휴직사유별로 보험료 경감률이 다르다.
 - 가) 육아휴직, 질병휴직, 무급노조전임자휴직, 기타휴직 등 휴직자
 - 나)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자
-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경감을 신청한다.
- 단,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휴직월부터 적용하며, 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복직월의 전달까지 적용한다.
- [별첨]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
- [별첨]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

● 효과

- 휴직 등의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 최대 60%까지 경감된다.

○ 국민연금: 납부예외제도

● 신청절차

- 아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.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휴직기간에도 연금보험료가 계속 부과된다.
 - 가) 휴직중인 경우: 산전후휴가, 육아휴직, 기타 휴직
 - 나)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
 - 다) 초·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등
-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예외사유가 없어진 날(납부재개일)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 가능하다.
- 납부예외 기간이 경과하여 복직한 경우 복직일을 납부재개일로 하여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.
- [별첨]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납부재개 신고서

● 효과

- 휴직 등의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. 납부예외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고

연금급여 산정시 연금액이 줄어든다.

-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지급은 가능하다.

○ 고용·산재보험: 휴직 등 신고제도

● 신청절차

- 아래 사유와 같이 근로자가 휴가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.
 - 가)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·휴직
 - 나)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
 - 다) 출산전·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
 - 라) 육아휴직, 육아기근로시간단축
 - 마)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(산재보험만 해당)
- 여기서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휴직 등 신고대상이 아니다.
- 참고로 노조전임자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만 부과되므로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(일반근로자↔노조전임자)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.
- [별첨]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

● 효과

- 휴직 등 기간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보험료정산 또는 보수총액신고 때 납부한다.

구분	월별보험료 부과	정산보험료 부과	보수총액신고
고용보험	×	○	○
산재보험	×	×	×

끝.

하나로컨설팅노무법인
공인노무사 신정욱